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을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등 〉

■ 박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28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6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박정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28호)	1
2. 이용우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68호)	2
III. 검토의견	3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4월 25일 박정위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4월 28일 이용우위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정위원안(의안번호 제2210128호)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1조의4 신설 등).

2. 이용우의원안(의안번호 제2210168호)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음.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되었는데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수준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많고, 공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확인·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배출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지역주민·전문가·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이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등

양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u>사업장은</u>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 ----- ----- ----- ----- ----- ----- ----- <u>사업장은</u>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를 작성하여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이 용 우 의 원 안

⑤ -----

----- 공개 하
여야 한다.

현행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⑦ (현행과 같음)
⑧ (생략) <신설>	⑧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3(배출저감 계획서 이행 점검 등)</u>	⑧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평가 등)</u>
	①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현 행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u>은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u>	<u>은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배출저감 방안이나 배출저감 사업장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u>	<u>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을 확인·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배출저감 방안 또는 배출저감 실적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u>	<u>④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배출저감 방안 또는 배출저감 실적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u>

현 행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u>는 경우에는 배출 저감 사업장을 설 치·운영하는 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개선· 보완 요청받은 사 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사업장의 배출 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 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u>	<u>경우에는 해당 사 업장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시정 조치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⑤ 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u>

현행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신설>	제11조의4(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제6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③ (생략)	<u>다.</u> 제6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1)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

1) 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염물질 중 화학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²⁾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대상 물질³⁾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⁴⁾하며,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3) 벤젠 등 9종(20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0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2030년)으로 대상물질 단계적으로 확대(환경부)

4) **시행규칙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제 사업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절차]

①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4.30.)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②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안전원)를 실시(~6.30.)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간 동일한 기준 적용)
③계획서 공개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제품 정보(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가능 *(공개방식) 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②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2024년까지 공개된 배출저감계획서는 총 312건
④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4.30.)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행 여부 확인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저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에 양 개정안은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른 사업자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박정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여부	재량 (현행과 같음)	의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상황 확인	환경부장관,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으로 결정 (안 제11조의4제1항)	환경부장관,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설치 (안 제11조의3제3항)
시정조치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요청	
과태료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 제64조제2항제1호의2)	—

첫째, 이용우의원안 제11조의2제5항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는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여부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배출 감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12조5)에 따라 이미 매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

5) 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배출저감계획서까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⁶⁾.

둘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배출저감 방안 등에 대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박정의원안의 경우에는 점검 이후 사후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출 저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목표량 달성이 어려울 수 있고, 자율적인 저감 노력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평가할 때 관계 행정기관, 지역 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소재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다만,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가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여부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인근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의2⁷⁾에서는 관할구역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통한 협의체 구성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6

7) **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